바른미래당 정책수요조사서

정책수요조사서는 2019년도 바른미래당에서 수행하여야 할 기본 및 정책과제의 발굴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 본 양식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제출기한 : 2월 28일(월) 18:00 까지
- 제 출 처 : 이메일(badadream00@gmail.com) 회신

제안명	**시설물 안전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 개정**
추진방식	■ 법률안 제·개정 □ 예산·결산 □ 국정감사 □ 정책공약
해당상임위	□ 법사·행안위 □ 예결위 ■ 국토위 □ 농해수위 □ 복지위 □ 기재위 □ 환노위 □ 과방위 □ 교육위 □ 문체위 □ 외교·국방위 □ 정무위 □ 여가위 □ 기타( )
현황 및 문제점	(1) 성수대교 붕괴(1994), 삼풍백화점붕괴(1995) 후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(이하 '시설물 안전법')」에 의해 1995년 세워진 사단법인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(이하 '협회')가 타 협회와 달리 법정기관 지정은 물론 국가로부터 어떤 위임사무도 받지 못하고 있음 (2) 국가 SOC사업을 포함한 건설산업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공사의 산물인 시설물의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나(전국적으로 30년이상된 건축물이 37%이상) 국가 전체 750만개 시설물 중 「시설물 안전법」에 의해 관리되는 1,2,3종 시설물 25만개를 제외하면 약 96%인 725만개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. (3) 국가는 정부기관인 '한국시설안전공단(이하'공단')'을 두어 1,2,3종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용산 상가건물 붕괴, 상도유치원 붕괴, 삼성동 대종빌딩 기둥균열 등 종외시설물인 규모가 작은 민간시설물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. (4) 시설물의 급속한 노후화에 대비하고, 국가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,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는 「시설물 안전법」에 '협회'의 기능과 '공단'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보완하여 법의 안전성과 시설물의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(첨부: 안전분야 협회의 위임업무현황비교)
정책개발 세부내용	**(1)방법:「시설물 안전법」에 협회설립의 근거를 두고 기능과 위임·위탁 업무를 규정함.** **[1안]** **제0장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단체** **제00조(협회의 설립)** **①안전진단전문기관(이하'진단기관')의 품위보전, 안전진단기술의 개발, 그밖에 안전진단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진단기관은**

	진단기관단체(이하'협회')를 설립할 수 있다.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 ③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등은 정관으로 정한다. ④협회의 인가와 정관, 감독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 제00조(협회임원의 결격사유) ①「시설물안전법」제47조 공단임원의 결격사유와 동일 제00조(사업 및 자문 등) ①시설물안전관련 용역의 실적관리 ②시설물안전기술자의 경력관리 ③법정교육훈련 ④기타 정관이 정한 사업 ⑤협회는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건의를 정부에 할 수 있고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정부의 지원요구,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. ⑥협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원 또는 회원자격을 가진 진단기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 제00조(「민법」의 준용) 협회에 관하여 이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[2안] 제00조(안전진단전문기관의 단체)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(이하'진단기관')의 품위보전, 안전진단기술의 개발, 그밖에 안전진단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단체(이하'협회')에게 시설물안전관련 용역의 실적관리, 시설물안전기술자의 경력관리, 법정교육훈련 등을 위임 및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기대효과	(1) 국가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국민행복과 안전에 기여 (2) 안전 및 유지관리 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(3) 진단기관과 시설물안전기술자의 권익향상과 자율정화
관련법 or 산출근거	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

제안 단체	기관/단체명	(사)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
	기관분류	■ 직능단체 □ 학계 □ 연구계 □ 산업계 □ 기타
	연락처	(전화)02-567-1307 (핸드폰)010-8688-5619 (E-mail)assi1307@naver.com